

폐기물부담금

[] 징수유예

[] 분할납부

[] 징수유예 기간 연장

[] 승인

[] 불승인

통지서

관리번호

성명			생년월일			사업자등록번호		
주소					전화번호			
상 호 또는 명 칭								
사업장 소재지								
사업의 종류					종목			
폐기물부담금의 내용		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금액		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	금액			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		분할납부금액		
불승인 사유								
귀하가 20 . . .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								